#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90

2024년 9월 9일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12일, 최유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3. 상정일자 :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4년 9월 9일 상정, 원안가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유희 의원)

## 1. 제안이유

○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 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 제 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학교급식실의 안전한 조리환경과 급식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4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5조)

- 학교 급식시설 환경 및 급식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 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리실 내 적절한 환기설비와 소방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비·치료비 지원 및 휴게시설·휴게시간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급식시설의 개선 여부, 운영실태 등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제13조·제15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심혁보)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12일 최유희 의원에 의해 의안번 호 제1990호로 발의되어 202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 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난 제324회 정례회를 통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 그러나 학교 급식시설과 급식종사자 근무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감의 중장기적 계획, 개선이 필요한 급식시설 및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 학교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급식시설 환경 및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 등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개정 취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 니다.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 레」로 변경하는 것으로,
- 제명을 변경함으로써 동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범위를 '학

교 급식시설'로 특정할 수 있고, 학교 급식시설 환경을 개선한다는 조례안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이 조례의 입법목적을 저해하거나 현행 조례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2)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실태조사(안 제7조)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는 학교급식실의 안전한 조리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하기 위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안 제1항), 이때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안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2항),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3항)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기본계획의 수립은 안전한 학교급식실 조성을 위해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입 법조치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학교급식기본방향」을 통해 학교 급식 운영 방식과 예산·인력관리·행정지원에 관한 기준, 식재료 구매 관리와 학교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학교급식 중기 발전 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바,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4년으로 규정한 것은 정책 수립의 연계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한편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청 정책이 총체적으로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7조는 학교 급식시설 환경 및 급식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 정책의 직접적 수요자인 급식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급식시설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인바, 정책 추진의 연계 및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 3) 급식실 환경 개선(안 제8조)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는 교육감이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과 조리 종사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급식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안 제1항), 급식시설 개선 시 준수해야 할 지침을 안 제2항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급식실의 안전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역시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및 조리종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여러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지침」을 통해 급식실 내에서 발생하는 화상, 야채분쇄기 등에 의한 신체일부 절단, 근골격계질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배치, 조리기계·기구 및 보관실 배치, 건조 및 물기허용 구역을 구분하는 기준 등을 수립하였으며,1)
  - 2023년에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통해 환기시설 설치 적정성 검토, 사용 중 점검·관리 방법, 환기설비의 검사방법(체크리스트) 등 환기시설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2)
  - 교육부 또한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 검진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202 3)」을 마련하여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및 지원예산을 보통

<sup>1)</sup>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지침」, 2012.12.

<sup>2)</sup>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2023.8.

교부금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학교 1교당 1억원 예정), 지하 조리시설과 급식실 인력지원 체계를 개선하기로 한 상황입니다.3)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지하급식실 해소를 통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폐질환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8년까지 지하에 급식실이 있는 학교(107교)에 대하여 2028년까지 지상 증축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지상급식실(942교)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환기시설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4)
- 따라서 안 제8조는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기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다시 한번 부여하고, 현재 추진 중인 급식실 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정책 방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현장과 일반단체급식 시설이 상이함을 이유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구체적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안제8조2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989, 2024.8.21)
  - 그러나 학교현장과 일반단체급식 시설이 상이할지라도 급식시설에 대한 환기시설은 현재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해당 지침의 개정에 따라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 5)을 수립하고 있는바, 안 제8조2항을 원안처럼 규정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학교 급식실에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분석하고 기술지침의 내용을 보완·반영한 것이다."

<sup>3)</sup>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발표, 2023.3.14.

<sup>4)</sup> 서울자치신문, 서울시교육청 '지하급식실 해소계획' 발표, 2024.3.26.

<sup>5) &#</sup>x27;서울시교육청,'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발표',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24.6.3. 내용 중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23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시범사업(41교)을 토대로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 6월 3일 공개했다.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에 부합하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하여,

- 4) 조리실 공기질 관리(안 제9조)에 대한 검토
  - 안 제9조는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항)하고, 이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항)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정은 급식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급식종사자의 쾌적한 근로환경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조리실의 환기설비 설치는 학교 시설 여건과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8989, 2024.8.21)
    - 그러나 「학교급식법」제6조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8)에서는 조리장에 대한 시설·설비는 증기, 불쾌한 냄새 등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리실의 환기설비 설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으로서 이를 강 행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체계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sup>6)</sup> 제6조(급식시설·설비) ①<u>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u>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sup>7)</sup> 제7조(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up>1.</sup> 조리장 :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sup>8)</sup>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sup>■</sup>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 29.>급식시설의 세부기준(제3조제1항관련)

<sup>1.</sup> 조리장

가. 시설·설비

<sup>1)~9) (</sup>생 략)

<sup>10)</sup> 조리장내의 증기, 불쾌한 냄새 등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처럼 학교 시설여건과 예산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사업추진에 있어 시기적 측면에서 고려대상이 될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법규의 적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없다 할 것입니다.
- 5) 소방시설 설치(안 제10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0조는 급실실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항) 이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 2항)하고 있습니다.
  - 먼저 안 제1항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 급식소 역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9)

이에 따라 학교 급식실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 치해야 하는 상황인바, 안 제10조1항은 상위법의 사항을 규정한 것 으로 법적 체계상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sup>9) 「</sup>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sup>[</sup>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 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sup>2)</sup>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나)「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sup>「</sup>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up>12. &</sup>quot;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989, 2024.8.21)
  - 그러나 이처럼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재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급식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학교 관계자 및 일반시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규정의 효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안 제10조1 항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안 제2항과 관련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의 사무10)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11)는 교육감의 권한에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사무의 위임을 규정한 안 제10조2항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6)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안 제12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2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안 제1항)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안 제2항)하고 있습니다.

<sup>10)</sup>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sup>11)</sup>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 ② (생 략)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 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규정은 급식종사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급식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 정한 안 제12조제2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 관리담당관-8989, 2024.8.21)
  - 그러나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급식종사자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안 제12조제2항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7) 예산 등의 지원(안 제14조) 및 지도·감독(안 제15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4조는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 급식을 위한 교육 감의 예산 등의 지원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급식시설과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예산 등의 지원, 지도·감독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학교급식에 있어 교육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V . 토론요지 : 없음.
-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IX.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 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
- 3. "급식시설"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 항의 시설·설비를 말한다.
- 4. "조리실"이란 급식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

설 등을 갖추고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 5. "급식종사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명시된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급식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안전한 조리환경과 급식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 2.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소방시설 설치, 급식기구 현대화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3. 급식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 급식시설 안전문화 조성

및 예방시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학교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급식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하다.
  - ②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급식종사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학교 급식시설 환경 및 급식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 ·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급식시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과 급식 종사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식시설을 지 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지하 급식시설의 지상 이전 추진
  - 2. 조리과정에서의 유해 물질 차단 및 조리실 환기시설의 개선
  -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방지
  - 4.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편의시설의 확보
  - 5.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감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지침」등을 준수하여 급식시설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 제9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조리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10조(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건강관리 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1의2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연수)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 등의 지원) 교육감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 급식시설의 개선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